

# 부산직할시사하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이유서

|      |     |
|------|-----|
| 의안번호 | 148 |
|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1992. 11. 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 정 이 유

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에 이웃돕기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 요 내 용

- 기금의 재원(제3조)
  - 이웃돕기 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지원대상(제4조)
  -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
  - 불우 보훈대상자 및 재해이주민
  - 가두 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
 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취약지 근무 경찰, 군인
  -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민 또는 단체
- 기금의 관리(제5조)
  -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
  - 기금 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, 기금출납 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.
- 관계 규정의 준용(제7조)
  -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한다.

## 3. 관 계 법 령 :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내지 제2항